

제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보자 보호 및 제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되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의 법규 또는 사규 위반, 비리, 부당행위 등 비윤리에 대한 제보에 적용된다.

제3조(신분보장)

- ① 회사는 제보자(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 포함. 이하 같음) 및 제보내용이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하여 근무조건의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탐문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려고 하거나 공개한 임직원 또는 제보를 이유로 하여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피제보자가 전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예외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닌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
2. 수사, 조사 등 필요에 의해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3. 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경우
4. 제보자 스스로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경우
5. 조사 과정상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책임 감경 또는 감면)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제보자의 비윤리가 발견되어 제보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제보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허위제보)

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경우 피제보자가 받았을 징계와 동일한 징계를 허위제보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부칙(2003.09.01.)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2.01.)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1.0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0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